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09년 7월 6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도이치자산운용(주)
(영문명) Deutsche Asset Management (Korea) Co.,Ltd
(홈페이지) <http://www.deam-korea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19층
(전 화) 02-724-7400

대 표 이 사 : 신용일, 김태형

담 당 책임자 : (직 책) 준법감시인
(성 명) 정 진 권 (전 화) 02 - 724 -7460

작 성 자 : (직 책)준법감시부 부장
(성 명) 장 은 정 (전 화) 02 - 724 -7461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송 등의 제기·신청

1. 사건의 명칭	중개수수료 지급 청구의 소
2. 원고·신청인	지케이부동산중개주식회사
3. 청구내용	<p>청구취지 : 피고는 원고에게 금778,140,000원 및 이에 대한 사건송달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.</p> <p>청구이유 :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-1 소재 토자 및 건물(“여의도빌딩”)의 매매가 2009년 5월15일 키움증권(주)의 매입으로 매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, 여의도빌딩의 소유주인 디비리얼에스테이트에이비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(“디비리얼”)와 디비리얼의 여의도빌딩에 대한 투자일임을 맡은 도이치자산운용(주)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.</p>
4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5. 향후대책	<p>원고인 지케이부동산중개주식회사는 키움증권(주)로부터 부동산 취득을 의뢰받은 중개법인으로서 키움증권(주)이 최종 여의도빌딩의 매입자가 되었다 하여 다수 매수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(14개사가 매입 검토 및 자산실사를 실시하고, 5개 회사가 최종입찰에 참여)에 대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, 또한 원고는 키움증권(주)를 통해 2009년 5월14일 당사에 제출한 법인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통해 원고가 키움증권(주) 일방의 부동산중개법인이며, 당사로부터 어떠한 중개를 의뢰 받은 사실이 없으며, 재차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바 있음. 따라서, 당사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함.</p>
6. 제기·신청일자	2009.06.19
7. 확인일자	2009.07.03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